

현행 정관 ('19년 5월 31일 개정)	제도개선위원회 개선안
<p><b>제1장 총칙</b></p> <p>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PR학회라 칭한다.</p> <p>제2조 (사무소의 소재)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p> <p>제3조 (목적) 본 학회는 Public Relations에 관련되는 이론과 실제의 연구와 발표 및 교육, 국내외 관련 기관 및 업계와의 협력 및 교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PR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PR의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li> <li>2) 회지, 회보 및 연구도서의 간행</li> <li>3) 이론과 실제의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li> <li>4)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li> <li>5) PR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 활동</li> <li>6)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li> </ol> <p><b>제2장 회원</b></p> <p>제5조 (회원의 구성) 본 학회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p> <p>제6조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사회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 및 대학원에서 PR 또는 이와 관련된 교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이상인 자</li> <li>2) 공인된 연구기관 및 단체에서 PR과 이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향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li> <li>3) PR학 또는 인접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li> <li>4)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PR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전문 PR인</li> <li>5) PR분야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전문 PR인</li> </ol>	<p><b>제1장 총칙</b></p> <p>제1조 (명칭) <b>본 학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PR학회'이며, 영문명은 'Korean Academic Society of Public Relations (KASPR)' 이다</b></p> <p>제2조 (목적) 본 학회는 Public Relations(이하 PR로 칭함) 관련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은 물론 국내외 관련 기관 및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PR학과 관련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PR과 관련된 교육과 연구사업</li> <li>2) 학술지 (홍보학연구, Asian Journal of Public Relations) 및 연구도서 발간</li> <li>3) 정기학술대회, 특별세미나, 강연회, 기타 학술행사 개최</li> <li>4)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li> <li>5)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li> </ol> <p><b>제2장 회원</b></p> <p><b>제4조 (회원의 구성)</b> <b>본 학회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b></p> <p>제5조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요건 중 한 개 이상을 충족하고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PR학 또는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li> <li>2.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PR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li> <li>3. PR분야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li> <li>4. 공인된 연구기관 및 단체에서 PR 관련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향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li> </ol>

제7조 (준회원)

준회원은 PR학 또는 인접분야의 석, 박사 학위 과정에 있는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8조 (단체회원)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PR 관련기관, 단체 및 연구소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입회금을 납부한 단체로 한다.

제9조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이사회가 추대한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입회금 및 회비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당해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준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활동에 참여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
4.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연회비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연회비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1조 (회원의 탈퇴 및 회원자격 상실)

1. 본 학회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2. 본 학회의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사람은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단, 외국 체류 등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으로서 본 학회에 재가입 하고자 할 경우, 직전 2개 년도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원의 제명)

본 학회의 회원으로 PR학회의 명예를 손상하였거나 본 학회의 회칙을 위반한 사람은 이사회 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6조 (준회원)

준회원은 다음 요건 중 한 개 이상을 충족하고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 PR학 또는 관련 분야의 석, 박사 학위 과정을 이수 중인 자
2. PR 관련 현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제7조 (단체회원)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기관 및 단체로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가진다.
2. 정회원은 본 정관에서 정하는 자격에 따라 회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3. 준회원과 단체회원은 총회에 출석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가질 수 없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학회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2. 학회 회원은 학회 정관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3. 학회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지닌다.

제 10 조 (회원의 탈퇴, 회원 자격의 상실 및 회복)

1. 학회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2. 본 학회의 회원으로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3.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로서 본 학회에 재가입 하고자 할 경우, 직전 2개 년도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1 조 (회원의 제명)

본 학회의 회원으로 PR학회의 명예를 손상하였거나 본 학회의 회칙을 위반한 사람은 **징계위원회의 의결과 이사회의 결정으로 제명**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제3장 임원

#### 제13조 (임원의 종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3명 이내(차기회장 포함)
- 3) 이사 (회장, 부회장 포함 5인 이상)
- 4) 감사 2명

#### 제14조 (임원의 임기)

1.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1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동안 활동한다.

#### 제15조 (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이사들과 협의하여 학회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주요 사업에 참여하며,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2인 이상의 부회장을 두는 경우, 회장 유고시 이사회에서 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제16조 (차기회장)

1. 차기회장은 회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
2. 회장추천위원회는 현 회장을 포함한 전임회장단에서 5명 (직전회장 4인 및 현회장) 그리고 이사회에서 추천된 4명으로 구성된다.
3. 회장추천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사람을 회장후보로 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

#### 제17조 (감사)

-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감사는 2인을 두며, 전임 및 전전임 회장을 감사로 위촉한다.

### 제3장 임원

#### 제 12 조 (임원의 종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이내 (차기회장은 당연직 부회장)
3. 이사 10명 이상 (총무이사, 연구이사, 기획이사, 홍보이사, 편집이사 등)
4. 감사 2명

#### 제13조 (임원의 선임)

1. 회장은 제18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출된 자로 한다.
2. 부회장은 차기회장이 당연직으로 임명된다.
3.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단 학회 운영을 위해 필요시 산학협력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할 수 있다.
4. 감사 2인은 총회에서 추천하여 승인받은 자로 한다.

#### 제14조 (임원의 임기)

1.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1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동안 활동한다.

#### 제15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이사들과 협의하여 학회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주요 사업에 참여하며,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학회 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본 학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6조 (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통해 해임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회원 제명되었거나 이에 해당하는 행위
2. 회계 부정 또는 부당행위를 통하여 본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8조 (이사)

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3.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9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 이사회는 2월과 10월 개최한다.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재적이사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3.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및 의결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예산과 사업보고 및 결산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 5) 본 학회 규약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기타 업무 집행과 관련된 사항
4. 회장은 이사회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안건을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5.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0조 (이사의 직무)

1.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무, 연구, 편집, 홍보, 국제, 산학협동 등 학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분야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2. 총무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며 제반 학회 활동을 수행한다.
3. 연구이사는 홍보분야의 학문연구에 필요한 연구계획서 작성 및 학술논문 발표회를 계획하고 주관한다. 또한 본 회의 연구활동을 국가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활성화 하는데 공헌하기 위하여 영남, 호남, 충청-강원, 해외에 각 지역연구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4. 홍보이사는 본 학회의 홍보업무를 주관한다.
5. 편집이사는 본 학회의 논문집 발간, 회지 발간 등 모든 출판 업무를 주관한다.
6. 산학협동이사는 본 학회 목적에 따른 산학협동사업을 기획, 추진, 주관한다.

제17조 (선거관리위원회 및 후보추천위원회)

1. 회장 선출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필요시 후보추천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임명한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전반적인 과정을 감시 운영하며, 부적절한 선거운동 행위 적발 시, 해당 후보자에게 경고 조치를 하거나, 입후보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회장 입후보자의 정견 고시 기간을 정해 공시해야 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3개월 전 이내로부터 차기회장 의결을 위한 총회 종료 시까지 활동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회장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2인 이내의 후보자를 공천한다.
6. 후보공천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한 정회원 5인으로 구성한다.
7.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당해 연도 선거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18조 (회장 선출)

1. 회장 입후보자는 회장 선거 공고일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했어야 한다.
2. 회장 입후보자는 당해 연도 선거관리위원을 제외한 정회원 20인 이상의 추천동의서와 함께 후보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제2항에 의한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회장 후보자가 입후보 자격을 갖게 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또는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입후보자에 대해 적격여부를 심사 후, 회원들에게 공시한다.
5. 회장 선출을 위해 선거인단을 결성한다. 최종 회장 입후보자 확정 후 정회원 대상 선거인단 등록 기간을 공시하고, 회장 최종 선출 1개월 전까지 선거인단을 확정한다.
6. 선거인단 등록자는 직전 연도 가을철 정기학술대회까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정회원이어야 한다.
7. 중도에 회비 미납 등으로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0조 3항에 의거하며 미납회비를 납부한 후 선거인단으로 등록할 수 있다.
8.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최다득표를 한 후보자를 총회에 보고하고, 해당 후보자는 회장으로 최종 선임된다.
9. 단독 후보자일 경우에는 해당 입후보자가 과반수 이

<p>제4장 총회</p> <p>제21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최된다.</p> <p>제22조 (총회의 기능)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li> <li>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li> <li>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사항</li> <li>4)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부에 관한 사항</li> <li>5)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li> <li>6) 기타 중요한 사항</li> </ol> <p>제23조 (총회의 소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정기총회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14 일 이내에 개최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li> <li>2) 재적회원 1/3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li> <li>3) 감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li> <li>4)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li> </ol> </li> <li>2. 전항에 의하여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li> </ol> <p>제24조 (의결 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p> <p>제5장 학회활동</p> <p>제25조 (출판) 본 학회는 학회지 [홍보학연구]와 [Asian Journal of Public Relations]를 발간한다. 1. 발간에 관한 모든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편집위원회 내규는 각 편집위원회에서 결정 후, 이사회에 승인을 받는다.</p> <p>제26조 (연구발표회) 본 학회는 연 2회 이상 연구발표회를 갖는다. 연구발표회에 관한 사항은 연구위원회에서 결정 한다.</p>	<p>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총회 보고를 거쳐 차기회장으로 선임될 수 있다.</p> <p>10. 차기회장 선출은 임기 시작 전년도 가을 정기학술대회 개최일까지 완료한다.</p> <p>11. 9항의 단독후보자가 과반수의 표를 얻지 못할 경우, 차기 집행부가 이듬해 3월 말까지 회장선거를 재실시한다.</p> <p><b>제4장 총회</b></p> <p>제19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된다.</p> <p>제20조 (총회의 기능)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li> <li>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li> <li>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사항</li> <li>4.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부에 관한 사항</li> <li>5.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li> <li>6. 기타 중요한 사항</li> </ol> <p>제21조 (총회의 소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li> <li>2. 정기총회는 연 2회 정기학술대회 시 개최한다.</li> <li>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회장이 14 일 이내에 소집하며,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같은 비상시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적 이사 과반수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li> <li>2) 재적 정회원 1/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li> <li>3) 감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li> <li>4)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li> </ol> </li> <li>4. 전 항에 의하여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li> </ol> <p>제 24 조 (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p> <p><b>제5장 이사회</b></p> <p>제 25 조 (이사회 의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p>
---	---

<p>제27조 (기타사항) 본 학회는 25조와 26조에 명기된 사항 외에 다음의 활동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정기 또는 지역별 연구발표회 (특별세미나 등)</li> <li>2) 산학협동 간담회</li> <li>3) 외국과의 연구교류사업</li> <li>4) 출판 및 홍보 관련 사업</li> <li>5) 기타 본 학회에 의뢰되는 사업</li> </ol> <p>제28조 (연구회 및 연구회 운영위원회) 본 학회는 25조와 26조에 명기된 사항 외에 다음의 활동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구회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li> <li>2. 연구회는 매년 1회 이상 공개학술발표회(정기학술대회 연구회 세션 포함) 또는 연구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li> <li>3. 신규 연구회의 창설을 위해서는 연구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연구회 운영위원회는 각 연구회 회장과 학회 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총무이사, 연구이사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회장은 학회 회장으로 하고 간사는 학회 총무이사로 한다.</li> </ol> <p>제6장 재정(재산 및 회계)</p> <p>제29조 (재산의 구분) 본 학회는 Public Relations 이론과 실제 연구의 발전을 위한 연구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li> <li>2.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li> <li>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li> </ol> <p>제30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금,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p> <p>제31조 (회계년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한다.</p> <p>제32조 (예산편성) 본 학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2.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되며, 사전 위임장은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다.</p> <p>제 26 조 (이사회 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li> <li>2) 사업계획 및 의결에 관한 사항</li> <li>3) 사업계획 예산과 사업보고 및 결산의 작성에 관한 사항</li> <li>4)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li> <li>5) 본 학회 규약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li> <li>6) 기타 업무 집행과 관련된 사항</li> </ol> <p>제 27 조 (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정기학술대회 개최일에 소집한다. 3.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4. 회장은 이사회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안건을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해야 한다.</p> <p>제 28 조 (이사회 의결 정족수) 1. 이사회 상정안건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결과정에서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p> <p><b>제 6 장 학술사업</b></p> <p>제 29 조 (학술지 발간) 1. 본 학회는 학회지 [홍보학연구]와 [Asian Journal of Public Relations]를 정기 발간한다. 2. 학술지 발간에 관한 모든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 내규는 각 편집위원회에서 결정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p> <p>제 30 조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 그리고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이사와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p> <p>제 31 조 (학술행사) 본 학회는 다음의 학술행사를 주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기학술대회 (연 2회 이상 필수)</li> <li>2. 부정기 또는 지역별 연구발표회 (특별세미나 등)</li> <li>3. 산학협동 간담회</li> <li>4. 국제 학술교류 행사</li> </ol>
---	---

<p>제33조 (회비부과 및 징수) 회비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p>	<p>5. 출판 및 홍보 관련 행사 6. 우수 학술상, 우수 논문상 등의 시상 7. 기타 본 학회에 의뢰되는 행사</p>
<p>제34조 (회계보고) 회계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지며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총회에 보고한다.</p>	<p>제 32 조 (연구회 및 연구회 운영위원회) 1. 연구회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연구회는 매년 1회 이상 공개학술발표회(정기학술대회 연구회 세션 포함) 또는 연구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3. 신규 연구회의 창설을 위해서는 연구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연구회 운영위원회는 각 연구회 회장과 학회 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총무이사, 연구이사로 구성한다. 5. 운영위원회 회장은 학회 회장으로 하고 간사는 학회 총무이사로 한다.</p>
<p>제35조 (기금운영) 본 학회는 기금운영위원회를 두고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서 적립된 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p>	<p><b>제7장 재산과 회계</b></p>
<p>제7장 사무국</p> <p>제36조 (사무국) 1. 본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간사를 둘 수 있다. 2. 사무국은 본 학회의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사무국장 및 간사의 보수 및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p>	<p>제33조 (재산의 구분) 1. 본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학회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p>
<p>제8장 보칙</p> <p>제37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 34 조 (수입금) 1. 본 학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총당한다. 2. 회비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p>
<p>제38조 (잔여재산 귀속) 본 학회를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p>	<p>제 35 조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p>
<p>부칙 1. 이 정관은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p>	<p>제 36 조 (예산편성) 본 학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부칙 1. 이 정관은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p>	<p>제 37 조 (결산) 회계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지며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총회에 보고한다.</p>
<p>부칙 1. 이 정관은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p>	<p>제 38 조 (기금운영) 본 학회는 기금운영위원회를 두고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서 적립된 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p>

제 39 조 (임원의 보수)

1. 본 학회는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2. 소관 업무 추진에 따른 소정의 수당 또는 교통비 등의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사무국**

제 40 조 (사무국 구성과 역할)

1. 본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간사를 둘 수 있다.
2. 사무국은 본 학회의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사무국장 및 간사의 보수 및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9 장 보칙**

제 41 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2 조 (잔여재산 귀속)

본 학회를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제 43 조 (정관의 변경)

1. 정관의 변경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2. 제도개선위원의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3. 제도개선위원회에 의해 수정된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을 확정한다.

제 44 조 (세칙의 제정)

이 정관에 명시된 조항 외에 본 학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45 조 (학회 특별위원회)

1. 본 학회는 학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제 11 조 징계위원회, 제 17 조 선거관리위원회, 제 18 조 후보공천위원회, 제 30 조 편집위원회, 제 32 조 연구회운영위원회, 제 43 조 제도개선위원회 외에 학술대회 조직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 등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특별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한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별도 세칙을 둘 수 있다.

	<p><b>부칙</b></p> <p>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제 2 조 (경과조치) 본 정관의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해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p>
--	--